

제 41회 총회 주요 결정사항

1. 총회임원선출

직임	노회명	교회명	성명	직분	전화번호	휴대폰
총회장	서울강남	동탄사랑의	이주훈	목사	031-613-1191	010-4137-1191
부총회장	대전	송촌장로	박경배	목사	042-637-5004	010-5433-2130
부총회장	경기	정남중앙	류춘배	목사	031-352-9345	010-5420-4020
장로부총회장	부천중앙	심곡제일	김우환	장로	032-664-6174	010-8902-0527
서기	충부	동은	김병덕	목사	02-990-4860	010-3722-2069
부서기	충남	천안임마누엘	이규철	목사	041-578-9182	010-3428-9182
회의록서기	인천	경성	윤양표	목사	032-814-8291	010-3750-8291
부회의록서기	부천중앙	시흥대로	김삼용	목사	02-839-9091	010-5380-5207
회계	충북	샘물	신맹섭	장로	881-5827	010-3572-3183
부회계	서울	가좌제일	정규성	장로		010-2209-3932
사무총장	제주		김중명	목사	064-745-1191	010-9067-6431

2. 각 부서장 선출

부장	노회명	교회명	성명	직분	휴대폰
정치부장	경서(D)	송천	최종환	목사	010-5341-0154
규칙부장	경충	새순	김기인	목사	010-8283-9354
재정부장	서울동	동선	이우식	장로	010-5235-2230
교육부장	경서(D)	염광	고혁성	목사	010-9555-5170
사회복지부장	전라	낙원	남세도	목사	010-5555-5100
재판국장	인천	청량산	정원석	목사	010-5472-0849
경목부장	서울동	참된	강영철	목사	010-4690-3301
문화체육부장	충남	천안수정	이의순	목사	010-4121-1977
군선교부장	경서(B)	한승	유용원	목사	010-6258-8298
전도부장	수도(B)	생명샘	박기호	목사	010-6229-7004
평신도부장	한성	영광	김동기	목사	010-3311-9554
헌법위원장	경충	신실	권오성	목사	010-3209-9786
감사위원장	경동(B)	소망선교	정병훈	목사	010-6360-1004
고시위원장	수원	열리는	김자중	목사	010-5875-9191
선거관리위원장	서울강서	백석	이승남	목사	010-7773-3555
기소위원장	충남	신광	박웅대	목사	010-5431-2850
환경과생명위원장	한성	오포효정	이순기	목사	010-3771-1928
청소년위원장	충남	인천비전	성두현	목사	010-3792-8291
정보통신위원장	대전	지구촌사랑	박대순	목사	010-3186-4600
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	광명	성음	김정만	목사	010-2796-5751

3. 회기 및 교단명칭 결정

총회 회기는 제 41회기로,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백석대신)로 결정되었습니다.

4. 현의안 처리

1) 이대위 - 동성애와 동방번개 정종수 등에 대해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,

2) 헌법위원회 보고

① 대전노회에서 올린 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차기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수개정사항을 재점검 후 차기 총회에서 정식의결하기로 하다.

② 백석노회에서 올린 군목고시 합격자의 3월 안수 실시 규정의 개정안은 허락하다

③ 권역별 노회지역조정 건은 향후 헌법 수개정시 연구검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다

④ 강도사 가입자들에 대해 서는 총회전 일괄 편목고시를 시행하여 안수를 주는 안수절차의 건은 허락하다

3) 규칙부 현의안

① 지방신학교에서도 편목과정(ATA)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편목과정의 건은 기각하다.

② 신학위원회에서 올린 신학교에 대한 수시 실사의 건은 기각하다.

③교육원운영지침 제 2조, 가입자의 편목교육과정에 평생교육원과 실천신학대학원 졸업자의 정회원 자격 부여의 건은 허락하다.

④임원회에서 현의 한 1인1부서 편성(1인 1상비부서, 1특별부서 만 편성)건은 허락하다.

⑤특별위원회 연조 편성의 건은 기각하되 선교위원회는 추후 기타 토의시간 다시 다루기로 하다.

⑥연금재단이사의 5천만원 납부자 자격의 건은 허락하다.

⑦세례교인분담금의 50%총회사용과 개인지급 조정의 건은 기각 하다.

⑧선거시 후보자 예비 등록의 건은 허락하다.

⑨기타임원 선임을 회장단에 맡기는 선거업무규정 3장 12조 7항의 개정의 건은 기각하다.

⑩유지재단에서 올린 정관(주소변경) 제 2조 개정의 건은 허락하다.

4). 정치부 현의안 처리

①회의시 낭독용 윤리강령은 허락하다.

②전도부 훈련원 신설요청의 건은 자체로 하면 되는 것으로 허락하다.

③자세하게 첨부된 목회자 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다.

④연금활용을 위한 금융회사 설립의 건은 시기상조로 더 연구검토하기로 하다

5)기타안건

①신학위에서 보고한 신학교 재인준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니

①A부산신학교의 인준을 허락하며

②B대전신학교의 인준을 허락하며

③C호남신학교의 인준을 허락하며

④D경인신학교의 인준을 허락하며

⑤E미주지역의 신학교의 경우 1개정도는 향후 실사 후 허락해 주기로 하다.

⑥F전라신학교 연말까지 준비 된 실사현황을 보고한 후 심사하고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허락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다.

②정년문제 해석확정의 건은 향후 헌법 수개정시 연구검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하다.

③통합전권위 활동 허락요청의 건은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 포함 10인이내 인원을 선정하여 선통합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허락하다.

④공문발송시 이메일과 문자의 공식문건화의 건은 허락하다.

⑤총회불참자의 총대권 제재의 건은 이미 결의된 사항으로 기존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각하다.

⑥선교회 조직의 건은 해당 당사자들을 전원 배제하고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허락하다.

⑦각 부서 운영지침서 처리의 건은 정상절차에 의거한 처리가 안된 시행지침은 자칫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향후 각 부서에서 제정하여 올린 시행지침서를 규칙부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한 뒤 시행하도록 하다.

⑧이단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동의안은 허락하다.

⑨동북노회 목사 음재용씨가 질의 한 여목회자가 총회산하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는 총회장께서 총회 산하기관이라 답하다.

⑩세례교인분담금 70% 적립의 건은 총회 운영을 위해 총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당석현의안은 허락하다.

5. 기타 결정사항들

1)이대위 결정사항

①이인규씨에 대한 결정은 2년간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

②인도요가에 대한 결정은 참여금지를 결정하였으며

③신옥주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결정하였으며

④임보라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결정하였으며

⑤소에스더 및 우리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참여 및 교류 금지로 결정하였으며

⑥글로리아교회에 대해서는 참여 및 교류금지로 결정하였습니다.